

연구관리위원회 규정

제정 2013. 3. 1. 개정 2013. 7. 1.

개정 2015. 8.31. 개정 2016.12.2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의 연구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과 심의, 교수 연구활동 및 부설 연구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한다. <개정 2013.7.1., 2015.8.31., 2016.12.23.>

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
제3조(임기)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<삭제 2013.7.1.>
3. 연구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연구비 예산의 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
5. 연구 활동 장려제도에 관한 사항
6. 기타 연구 활동 지원과 부수되는 주요사항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정기회의는 매년 제1학기 중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특별위원회)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이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7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본 대학의 제 규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